

의안번호	2209915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5. 6. 4.
추계번호	25B23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들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u>20년간</u> 시행함(제1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간에서 <u>20년간</u>으로 연장	의무규정
2	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함(제1항)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u>평균가격을</u> 말함. 이하 같음)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u>평균총수입량</u>을 말함. 이하 같음)을 <u>초과하거나</u>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중 기준가격 산정 기준을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변경하고, 총수입량 기준 및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총수입량 기준 및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u>차액으로 함</u> .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u>차액으로 함</u> (제2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95%에서 100%로 변경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3	안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2. 상세 사유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요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 운영중

-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등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수산물로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농산물) ('22년) 대상품목 없음 ('23년) 생강 ('24년)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 (수산물) ('22년) 개량조개·뱀장어·아귀·홍합 ('23년) 대상품목 없음 ('24년) 가리비·전복
 - (지원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25.12.20.)¹⁾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은 사업연도(n 년)의 전년도($n-1$ 년)에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품목을 분석·선정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예) '25년 피해품목에 대하여 '26년에 조사·분석하여 지급 예정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 개요, 지급기준 및 산출방식, 예결산 현황, 연도별 지원 품목 및 지원액 등은 [참고자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요 및 지원현황 참고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6조제 1항)

-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2025년 12월 20일까지)에서 20년(2035년 12월 20일까지)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지원기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2015.12.20.~2025.12.20)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20년간 (2015.12.20.~2035.12.20)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러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은 사업연도(n 년)의 전년도($n-1$ 년)에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품목을 분석·선정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향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품목별 발동요건(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충족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지급단가 상향 조정(안 제8조제2항)

-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중 가격 기준을 현행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서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로 완화하고, 총수입량 기준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95%”에서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단가 상향 조정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개정안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 변경

		현행	개정안
지급 기준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u>평균가격의 90%</u> 미만으로 하락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u>평균가격</u>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좌동
		총수입량 기준 충족 and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 충족	총수입량 기준 충족 or 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 충족
	협정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①10%미만: 1.15, ②10~30%미만: 1.10, ③30%이상: 1.05	좌동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u>차액의 95%</u>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u>차액</u>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러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은 사업연도(n 년)의 전년도($n-1$ 년)에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품목을 분석·선정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향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수산물의 품목별 발동요건(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충족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업부가 최근 5년간(2020~202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 및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가 개정안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급 품목, 지급농어가 및 지급액 변동을 추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 변경에 따른 최근 5년 지급 품목 및 지급액 등 변화
예상(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추산)

소관	연도	품목수		지급농어가 (가구)	지급액 (백만원)
농림축산 식품부	2020	기준(A)	3개(녹두, 밤, 돼지고기)	4,163	60,958
		개정안(B)	16개(녹두, 밤, 돼지고기, 보리, 밀, 참깨, 딸기, 오리고기, 기장, 백향과, 복분자, 아스파라거스, 부추, 표고버섯, 고사리, 국화)	415,918	493,086
		추가(B-A)		411,755	432,128
	2021	기준(A)	1개(귀리)	203	616
		개정안(B)	11개(귀리, 보리, 밀, 조, 카네이션, 완두콩, 백향과, 호박, 몬스테라, 벤자민, 스파트필름)	98,382	67,824
		추가(B-A)		98,179	67,208
	2022	기준(A)	-	-	-
		개정안(B)	8개(보리, 밀, 옥수수, 체리, 감귤시설, 당근, 생강, 호박, 강황)	247,867	112,601
		추가(B-A)		247,867	112,601
	2023	기준(A)	1개(생강)	907	113
		개정안(B)	4개(생강, 팔, 대파, 아스파라거스)	85,928	11,133
		추가(B-A)		85,021	11,020
	2024	기준(A)	4개(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77,515	62,009
		개정안(B)	5개(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마리아느)	129,249	367,145
		추가(B-A)		51,734	305,136
해양 수산부	2020	기준(A)	5개(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1,607	1,896
		개정안(B)	12개(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까나리, 넙치, 농어, 말, 소라, 전복, 홍합)	1,607	16,258
		추가(B-A)		-	14,362
	2021	기준(A)	1개(청어)	345	663
		개정안(B)	8개(청어, 개량조개, 돔, 불락, 소라, 아귀, 전복, 홍합)	345	28,724
		추가(B-A)		-	28,061
	2022	기준(A)	4개(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890	1,133
		개정안(B)	7개(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소라, 전복, 갑오징어)	890	5,910
		추가(B-A)		-	4,777
	2023	기준(A)	-	-	-
		개정안(B)	6개(가리비, 고등어, 뱀장어, 새	-	10,247

소관	연도	품목수	지급농어가 (가구)	지급액 (백만원)
		조개, 전복, 참다랑어)		
		추가(B-A)	-	10,247
	2024	기준(A) 2개(가리비, 전복)	2,646	4,216
		개정안(B) 4개(가리비, 전복, 가자미, 방어)	2,646	6,936
		추가(B-A)	-	2,720

주: 1. 자료작성기준(농림축산식품부)

-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농어가와 지급액은 수입기여도가 1% 이상 계측된 품목으로 한정하여 산출하였음.
- 기장, 아스파라거스, 조, 완두콩은 공식적인 생산통계(생산량, 재배면적, 단수)가 존재하지 않아 지급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번식우(한우송아지) 사육농가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2024년 송아지 신청농가 수를 적용하여 지급농가수를 계산함.
- 산출된 지급농어가와 지급액은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한 전체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로 신청 자격(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과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모두 신청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됨.

2. 자료작성기준(해양수산부)

- (품목 내역) 개정안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품목을 추가
- (지급농어가) 본 사업은 어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추가 품목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가 수를 산정할 수 없어 기존 품목에 대한 지급 어가 수만 작성
- (지급액) 기존에 선정된 품목의 지급액 증가분과 개정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품목의 최대 지급예상액을 산출하여 작성(어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나 추가 품목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가 수를 산정할 수가 없어 추가될 수 있는 품목의 최대 지급예상액을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요 및 지원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요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등의 경영안정 도모

□ 지급기준

-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수산물 중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협정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 시장점유율 ①10%미만: 1.15, ②10~30%미만: 1.10, ③30%이상: 1.05

□ 산출방식

분야	산출방식	지원한도(상한액)
농업	생산면적 또는 출하 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¹⁾ × 조정계수²⁾ 1)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5 2)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국비 100%
어업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¹⁾ × 조정계수²⁾ 1) 지급단가 = (기준가격 - 평균가격) × 95% 2) 조정계수 = 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 국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원기간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15.12.20.)로부터 10년간(∼'25.12.20.)

□ 예결산 현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 예결산 현황: 2015~2025년>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세부사업 (사업코드)		피해보전직불(1072-392)			피해보전직불금(3467-300)		
내역사업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소계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소계
2015	예산	100,478	-	100,478	7,336	414	7,750
	결산	49,524	-	49,524	180	-	180
2016	예산	100,478	-	100,478	1,827	4,993	6,820
	결산	40,086	-	40,086	8,971	4,993	13,964
2017	예산	100,478	-	100,478	3,000	1,910	4,910
	결산	3,276	-	3,276	2,187	-	2,187
2018	예산	100,478	-	100,478	3,000	1,210	4,210
	결산	5,067	-	5,067	1,714	-	1,714
2019	예산	100,000	-	100,000	5,580	209	5,789
	결산	1,015	-	1,015	5,576	-	5,576
2020	예산	63,009	-	63,009	2,430	900	3,330
	결산	63,009	-	63,009	1,896	-	1,896
2021	예산	20,000	-	20,000	2,083	3,404	5,487
	결산	706	-	706	663	4,303	4,966
2022	예산	20,000	-	20,000	1,959	5,665	7,624
	결산	-	-	-	1,133	5,665	6,798
2023	예산	17,821	179	18,000	1,763	-	1,763
	결산	153	179	332	-	-	-
2024	예산	5,400	-	5,400	1,000	-	1,000
	결산	62,571	-	62,571	4,216	-	4,216
2025	예산	21,866	-	21,866	1,000	-	1,000

주: 국비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지원내역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내역: 2015~2024년>

(단위: 개, 가구, 백만원)

소관	연도	품목수	품목 내역	지급농어가	지급액
농림축산 식품부	2015	9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75,674	47,100
	2016	4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28,305	38,506
	2017	1	도라지	1,480	1,450
	2018	5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3,728	3,238
	2019	2	귀리, 목이버섯	176	476
	2020	3	녹두, 밤, 돼지고기	4,163	60,958
	2021	1	귀리	203	616
	2022	0	*지원요건 충족품목 없음	—	—
	2023	1	생강	907	113
	2024	4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77,515	62,009
	합계	30		192,151	214,466
해양 수산부	2015	3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1,109	7,156
	2016	3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874	1,756
	2017	10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1,576	2,187
	2018	7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새조개, 상어, 아귀, 주꾸미	1,778	1,714
	2019	7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2,033	5,576
	2020	5	명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1,607	1,896
	2021	1	청어	345	663
	2022	4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890	1,133
	2023	0	*지원요건 충족품목 없음	—	—
	2024	2	가리비, 전복	2,646	4,216
	합계	42		12,858	26,2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